★ ⊙

더불어 사는 행복한 희망 성동

문서번호	민원여권과-9475
결재일자	2016.4.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민원처리팀장	민원여권과장	행정관리국장	
이성혜	박정아	이창호	04/11 김종순	
협조				

- 구민중심의 민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및 정비 계획

2016. 4.

성 동 구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 업 구 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 통 분 야 고 려 사 항	● 구 민 : 유 ☑ ( ) 무 ☐ ● 전 문 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여 성 친 화 도 시	성평등 ☐ 안 전·편 의 ☐ 가족·공동체 회복 ☐ 여성 참 여 ☐
기 타 고 려 사 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 앙 부 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기 업 : 유 ☐ ( ) 무 ☑ ● 민 간 단 체 : 유 ☐ ( ) 무 ☑
언 론 홍 보 계 획	기획보도 ☐ 보 도 자 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구민중심의 민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및 정비 계획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사전심사청구제』 대상사무를 정비하여 제도의 활성화 및 구민중심의 민원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사전심사청구제도〉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민원 신청 전에 약식서류로 인·허가 등 의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상민원은 행정기관의 장이 정함

Ⅰ 추진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 『2015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 지침』(국무총리승인, 2015. 3.13.)

Ⅱ 현 황

▢ 운영현황

도 입 일	대상사무수	심사방법	상담·접수	사전심사	대장관리	홍보·사후관리
2006. 9. 11.	7종	서면심사	처리부서	처리부서	처리부서 및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

◈ 대상사무 7종
① 토지거래계약허가 ②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 ③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신청
④ 석유판매업 등록 ⑤ 고압가스허가신청 ⑥ 용기.냉동.특정설비의 제조등록
⑦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 신청

▢ 운영실태

○ 민원인과 담당 직원의 제도 존재 여부 및 활용에 대한 인식 부재

○ 인·허가 가능 여부 사전상담 시 민원인과 담당 직원간 비공식적인 협의로 진행
- 담당 공무원의 확약 부담 등으로 인해 소극적으로 운영

Ⅲ 추진계획

1 추진방향

▢ 기존 사전심사 대상사무 정비를 통해 민원 편의와 행정업무의 효율성 도모

▢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상민원의 추가 및 기존 대상민원의 정비로 제도의 현행화

▢ 지속적인 홍보로 제도에 대한 인지 및 활용성 제고

2 세부추진계획

▢ 기 지정·운영중인 사전심사청구제 대상사무 정비

○ 대상민원: 토지거래계약허가 등 7종

○ 정비내용

- 사전심사청구 대상사무 존치 여부 검토

▷ 구체적 기준이 미비하거나 단순 민원사무로 사전심사제가 불필요한 경우, 우리구 특성 상 민원접수가 없는 경우 등 존치 여부 검토

※ 대상사무 제외 시 반드시 사유 기재

- 법령, 행정여건 등을 재검토하여 사전심사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정비

▢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추가 지정 적극 검토

○ 대상민원: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허가· 신고 등 복합, 단순민원

○ 추가지정 민원

- '자치구 청구대상민원 지정 현황'(붙임4) 참고하여 추가 여부 적극 검토
- 위 해당 민원사무 이외의 신규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추가 여부 검토

▢ 사전심사청구제 안내 및 홍보

○ 대상민원,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처리절차 등 게시 및 민원편람에 수록

○ 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3 추 진 일 정

▢ 사전심사청구제 정비계획 통보 ---------- 2016. 4. 12.한

▢ 부서별 검토의견 제출 ---------- 2016. 4. 20.한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사무 지정 및 시행 ---------- 2016. 4. 22.한

Ⅳ 행 정 사 항

▢ 정비계획에 의거 검토의견서 제출: 해당 부서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사무 지정 및 홍보: 민원여권과

붙 임 1. 사전심사 청구제도 개요 1부
2. 성동구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 현황 1부
3. 대상사무 정비 검토의견서 1부
4. 자치구 청구대상민원 지정 현황 1부
5. 관련법령 1부. 끝.

〔붙임1〕

사전심사 청구제도 개요

▢ **근　　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 **의　　의:**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불허 조치할 때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에 약식서류만으로 민원의 가부를 심사하는 제도

▢ **대상민원:** 행정기관의 장(자치구청장)이 정함

- 복합민원 중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으로 사전에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 단순민원 중 불가 처리 시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는 민원

※ 자치구 청구대상 민원 현황: [붙임4] 참조

▢ **처리기간**

-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처리기간
-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30일이내

▢ **처리절차**

- 민원인접수 ⇒ 주처리부서 검토(관계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 처리결과 통보

▢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의 구비서류는 최소화하고 정식민원이 접수된 때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안됨

▢ **민원안내:**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과 민원별 처리기간, 구비서류 등을 게시 및 민원편람에 수록 하여야 함.

▢ **결과처리:** 사전심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붙임2〕

성동구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

(지정일: 2006. 9. 11)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토지거래계약허가 [토지관리과]	15	1. 허가신청서 1부 2. 토지이용계획서 1부 3. 자금조달계획서 1부 4. 이용목적에 따른 관련서류 1부	10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토지이용계획서 1부 3. 이용목적에 따른 관련 서류 1부	7	1. 허가신청서 1부 2. 자금조달계획서 1부
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 신청 [지역경제과]	20	1. 등록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2부 3.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10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15	1. 등록신청서 1부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 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신청 [지역경제과]	5	1. 허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3.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 4. 기술검토서	3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4	1. 허가신청서 1부 2.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 하는 서류 3. 기술검토서
석유판매업등록 [지역경제과]	7	1. 허가신청서 1부 2.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 1부 3. 주유기의 명세서 1부 4.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1부 5. 시·도지사가 영 별표2호 제1호 다목 기타란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저장시설과 주유기 배치도면	4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 1부 3.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1부 4. 저장시설과 주유기 배치도면	5	1. 등록신청서 1부 2. 주유기의 명세서 1부 3. 시·도지사가 영 별표2호 제1호 다목 기타란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신청 [지역경제과]	5	1.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3. 정관 및 등기부등본 4. 기술검토서	3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4	1. (변경) 허가 신청서 1부 2. 정관 및 등기부등본 3. 기술검토서
용기.냉동기. 특정설비의 제조(변경)등록 [지역경제과]	5	1. 허가(변경)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3. 정관 및 등기부등본 4. 기술검토서	3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4	1. 허가(변경) 신청서 1부 2. 정관 및 등기부등본 3. 기술검토서

민원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 [청소행정과]	10	1. 변경승인 신청서 1부 2. 처리기간대상폐기물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 1부 3. 폐기물의 종류·상태 및 예상배출량명세서 1부 4.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 확보계획서 1부 6.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7. 처리후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8.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 1부 9.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1부 10.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 1부 11.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신청시의 첨부서류 1부	5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처리기간대상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 1부 3. 폐기물의 종류·상태 및 예상배출량 명세서 1부 4.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및장비확보 계획서 1부 6.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7	1. 변경승인 신청서 1부 2. 처리후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3.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 1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1부 5.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 조사서 1부 6.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 1부

〔붙임3〕

사전심사청구 대상사무 정비 검토의견서

(부서명:)

☐ 민원사무명:

☐ 정비계획: 신규, 존치수정 등

※ 기존사무 제외시 사유기재

☐ 정비내용(신규 또는 존치: 관련법령,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검토후 수정사항 기재)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 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붙임4〕

자치구 청구대상민원 지정현황

연번	대상민원사무명	연번	대상민원사무명
1	개발행위허가	23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2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 인가	24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
3	건설기계 정비업 등록	25	아파트형공장 설립승인
4	건설업 등록	26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변경)허가
5	건축허가	27	옥외광고업 신규등록
6	고압가스용기 냉동기 및 특정설비 등록	28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7	고압가스제조 판매 저장소 설치 허가	29	자동차관리 사업등록
8	공장등록/부분등록	30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
9	공장설립 승인	31	조합설립인가(재래시장)
10	관광사업계획 승인신청	32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11	국내 유료직업사업등록	33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12	식품(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허가	3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13	대규모점포개설등록	35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
14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36	지정사업자 지정
15	도시계획사업(도시공원조성)시행허가	37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16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지정	38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17	보육시설(변경)인가	39	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
18	사업계획(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승인	40	토지거래계약허가
19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	4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
20	석유판매업 등록	4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21	성폭력 보호시설 설치	4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22	성폭력 상담실 설치	44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

〔붙임5〕

관 련 법 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① 민원인은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가 청구된 법정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가능한 것으로 통지한 민원의 내용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나중에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이하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2.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②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종류 및 민원별 처리기간·구비서류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 **제34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절차)** ①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20조, 이 영 제6조,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②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처리기간
2.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30일 이내

③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전심사의 청구 후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출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